

FSS/2311-16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2022년
- 회계결산일: 2013.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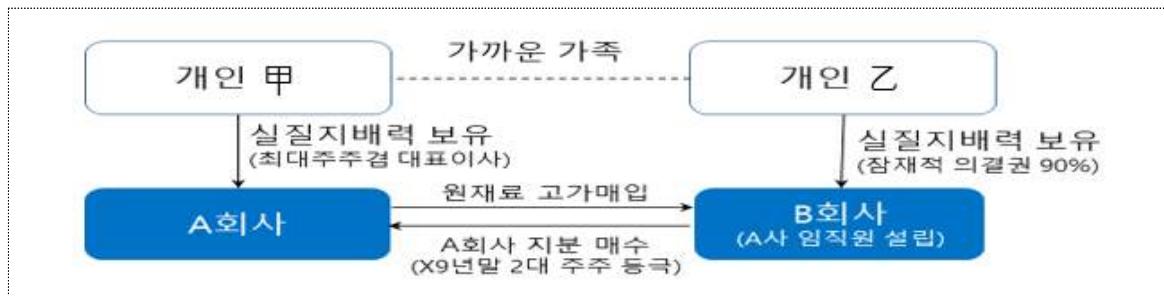
A사(이하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개인)이 회사를 실질 지배하고 있다.

회사의 임원인 丙은 X2년 6월에 회사의 공장 내에 장비부품 제조업체인 B사를 설립(전액 출자)하였으며, B사는 X2년 9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甲의 가까운 가족인 乙(개인)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乙이 B사에 대한 실질 지배주주 지위를 획득하였다.(잠재적 의결권 90%)

회사는 X3년부터 B사로부터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고가에 매입하였고, B사는 동 거래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회사의 지분을 계속 매수하여 X9년말에는 회사의 2대 주주가 되었으며, 乙은 B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회사의 보통주를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는 B사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구조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거래처인 B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의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B사와의 매입·매출 등 특수 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1)에 따르면, 개인이 보고기업에 지배력(공동지배력 포함)이 있거나 보고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2)에 따르면, 상기 ①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해 지배(공동지배 포함)되는 기업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甲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甲의 가까운 가족인 乙과 회사 임원인 丙이 B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B사는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시한 특수관계자 현황과 거래내역에 대해 통상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하였으며, 여러 연도에 걸쳐 회사와 B사 간에 발생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검토시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시한 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를 누락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